



Issue Report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및 의결 현황

-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중심 -

20210728

안상희 본부장

(02-769-3020)

보고서는 국내 주요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 보았음. 특히, 금융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는 달리 일반기업(非금융회사)이 보유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인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현황을 살펴 보았음.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후보자의 추천 및 의결 현황

-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191개 社)의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은 74건으로 전체 사외이사 선임 안건의 54.8% 비중을 차지하고, 기업당 1.3명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됨.
- 총 74건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은 36개 社이며, 이들 기업에서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된 경우는 총 49건임.
- 총 49건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인 재선임 안건은 총 26건으로 53.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반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인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의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함.

2) 일부 상장기업(한화시스템)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 후보자의 의결권 제한

-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삼성물산과 현대차그룹의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SK그룹의 SK하이닉스와 SK가스도 각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의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가 의결권을 행사(찬성)한 사례 있음.
- 반면, 한화그룹의 한화시스템(주)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동 위원회 소속인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 안건 2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긍정적인 사례가 있음.

3) 제언: 일반기업(非금융사)에도 제한적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 후보자의 셀프 추천 제한 필요

-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규정(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의 후보자 본인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음.
- 일반기업(非금융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으나, 1) 일정 기준(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 2)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후보자 본인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ESG경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I.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및 의결 현황

최근 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에서 기업경영을 강조하는 ESG경영이 최대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최근 2021년 상반기 이후 이사회내 위원회로 ESG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참고로 국내 1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104개社)¹ 중 이사회내 ESG위원회를 보유한 기업은 이미 50개社(비중 48.0%)로 많이 설치하고 있다.

이처럼, 상장기업들이 그동안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하던 기업경영에서 비재무적 요소(ESG)를 경영에 접목시키는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지배주주 역할이 기업경영에서 상당한 기능을 담당하는 국내 기업의 경영 환경하에서 이런 ESG경영이 원활히 안착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경영진 견제는 이사회의 기능 뿐 아니라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원활한 기능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자산)의 30대 대규모기업집단²(이하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 안건 관련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의 후보자 추천 현황을 살펴 보고, 지배구조 개선 등 ESG경영에 필요한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후보자에 의결 현황

: 사추위 소속인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 안건(32건) 중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는 2건에 불과

표1에 따르면,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191개社)의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자 안건은 총 135건으로 이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자의 재선임 및 신규선임 안건은 각각 74건, 61건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후보자 재선임 74건은 총 56개 동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기업당 1.3명의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가 선임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 1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104개 社)의 사외이사 후보자의 재선임 및 신규선임은 각각 44건, 34건으로 큰 비중(49.4%, 55.7%)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되는 안건은 통계에서 제외)

표1.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2021년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 후보자 안건 현황

	재선임		신규선임		(단위: 개社, 건) 소계
	상장기업 (개 社)	임원 (건)	상장기업 (개 社)	임원 (건)	임원 (건)
10대 그룹 소속 (104개 社)	34	44	28	34	78
30대 그룹 소속 (191개 社)	56	74	50	61	135

자료: DART(전자공시시스템),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주: 소계의 기업 수는 중복 제외,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되는 안건은 제외

¹ 2020년 5월 기준

²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의 자산총액 기준(2020.05 기준)

삼성,현대자동차,SK, LG, 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한진,두산,LS,대림,미래에셋,금호아시아나,현대백화점,카카오,한국투자금융,교보생명,효성,하림,영풍,HDC,KCC코오롱,OCI,이랜드,태영,SM(삼라마이다스)

표2는, 동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74건)이 있던 상장기업은 총 56개社로 이들 기업 중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정하는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다. 즉, 동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총 74건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36개社이며, 이들 기업의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은 총 49건으로 총 66.2% 비중으로 차지한다. 1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에서는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된 34개社 중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는 기업은 23개社이다. 이들 23개 기업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한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는 32건으로 상장기업 및 재선임 안건 비중이 각각 63.8%(23개社/36개社*100), 65.3%(32건/49건*100)로 높은 편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이들 상장기업(36개社)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 등 선임 절차의 적절성을 살펴 보았다.

표2. 동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49건)의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유 여부

(단위: 개社, 건)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유 여부	
	기업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10대 그룹 소속 (사외이사 재선임 34개社)	23개社	32건
30대 그룹 소속 (사외이사 재선임 56개社)	36개社	49건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재선임 74명건 안건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 재선임 건은 총 49건으로 총 66.2% 비중	

자료: DART(전자공시시스템),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주: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되는 사외이사 안건은 제외

표3은,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2021년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 후보자 재선임 49건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자 본인이 해당기업의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임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인 경우의 안건이 총 26건으로 53.1%의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인 아닌 경우의 안건은 12건에 불과하였다. 2021년 3월 기준으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이지만, 금년에 동 위원회로 신규 선임된 경우의 안건도 6건이 있으나, 이 경우는 이번 보고서에서는 논의하는 주제에 벗어나 있다.

또한,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 선임 과정에서 각 기업에서 동 위원회와 이사회 회의 내역을 통해서,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의 실제 출석 및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살펴 보았다. 다만, 감사위원회와 함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공시기간 중 회의 내역 공시는 관련 규정(기업공시서식 제7-1-3(이사회내 위원회)³에 따라 의무공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 내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외이사 후보자 안건에 대한 의결 내용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가 사추위 소속인 26건 안건 중에서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는 2건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머지는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가 속해 있는 사추위에서 후보자가 직접 참석하여 동 안건에 찬성을 표시하거나, 사추위 회의 내역이 공시되지 않은 기업은 해당기업의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 후보자가 사외이사 선임 등 해당 정기주주총회 주주총회소집결의 및 목적사항을 의결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가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임하는 기업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소속인 상황에서,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가 선임된다고 하면, 사외이사 선임의 절차적 정당성을 주주들에게 설득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를 선임하는 사추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³ 제7-1-3조(이사회내 위원회)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외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위원회별 명칭, 소속 이사 및 위원장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 2. 위원회 활동내용)

표3. 동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49건)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 여부

(단위: 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 여부 (2021년 3월 기준)			후보자의 이사회 및 사추위 의결 현황 (2021년 3월 기준)
	O	X	신규 선임	의결권 제한
10대 그룹 소속	16	10	5	2
30대 그룹 소속	26	12	6	2

자료: DART(전자공시시스템),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주: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되는 사외이사 안건은 제외

2)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중 사추위 소속인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의 기업

;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기아차, SK하이닉스 등 사추위 소속 사외이사 후보자 셀프 의결권 한화시스템은 사추위 소속인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표4는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의 후보자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인 경우의 기업별 리스트이며, 총 14개 그룹의 23개 상장 계열사에서 총 2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경우에 각각 2건, 1건의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가 직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이 행사되었다. 또한,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도 각각 1건의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가 후보자가 속한 사추위에서 후보 안건에 찬성 의견을 행사하였다. SK하이닉스와 SK가스도 각각 1명의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가 사추위에서 후보자 본인이 찬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화그룹의 한화시스템(주)의 경우에는 다른 그룹 소속 상장 계열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한화시스템(주)의 2021년 정기주주총회(2021.03.23)에서 3건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임주재, 방효복, 홍성철) 중 2건(임주재, 방효복)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의 후보자였다. 한화시스템(주)의 정기주주총회 전인 지난 2021년 2월 19일에 한화시스템(주)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 안건 중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동 위원회 소속인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 2명(임주재, 방효복)의 의결권을 제한하였다.(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홍성수 안건은 통계에서 제외하였으며, 후보자 홍성철은 사추위 소속이 아님)

표4. 동 그룹 소속 상장기업 중 사추위 소속인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 기업리스트(2021년 3월 신규 사추위 신규 선임 제외)

(단위: 개 사, 건)

구분	그룹	재선임 사외이사 후보자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 여부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의결권 행사 현황
		해당기업	재선임 사외이사 후보자 안건 (2021년 3월 신규 선임 제외)	
1	삼성	삼성전자, 삼성물산	3건(박**, 김**, 필***)	후보자 전원 의결권 참여
2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2건(김**, 한**)	후보자 전원 의결권 참여
3	SK	SK가스, SK하이닉스	2건(이**, 조**)	후보자 전원 의결권 참여
4	한화	한화시스템	2건(임**, 방**)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홍** 제외)	후보자 전원 의결권 제한
5	신세계	광주신세계,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마트	4건(위**, 한**, 구**, 한**)	후보자 전원 의결권 참여
6	CJ	CJ대한통운, CJ CGV	3건(정**, 송**, 김**)	후보자 전원 의결권 참여
7	한진	대한항공	1건(임**)	후보자 의결권 참여
8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현대홈쇼핑	2건(신**, 송**)	후보자 전원 의결권 참여
9	효성	효성	2건(김**, 손**)	후보자 전원 의결권 참여

10	태영	태영건설	1건(하**)	후보자 의결권 참여
11	하림	팜스코, 엔에스홈쇼핑	2건(노**, 전**)	후보자 의결권 참여
12	OCI	OCI	1건(한**)	후보자 의결권 참여
13	영풍	영풍, 고려아연	2건(최**, 김**)	후보자 전원 의결권 참여
14	SM	대한해운	1건(우**)	후보자 의결권 참여
소계	14개 그룹	23개 社	26안건	-

자료: DART(전자공시시스템),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주: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되는 사외이사 안건은 제외

II. 제언

; 일반기업(非금융회사)에도 제한적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 후보자의 의결권 제한 필요

통상적으로 일정 기준(자산 2조원 이상) 이상의 상장기업은 이사회내 위원회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에 상정될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사추위가 사외이사의 재선임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자신이 속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규정(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본인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2항과 제16조제3항·제4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현재 상장기업 사외이사의 실효성 측면에서 부정적 논란이 많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기업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금융회사에서 적용하는 관련 조항(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을 모든 상장기업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다만, 최소한 일정 기준(자산 2조원 이상) 이상의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 내지 일반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동 위원회 소속 후보자 본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지배구조 개선 등이 기업의 ESG경영을 추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Compliance Notice

〈Proxy Issue 보고서〉는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리포트로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은 특정한 투자상담, 권유, 또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당 연구소는 본 리포트에서 제공된 분석, 전망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관하여 그 정확성 또는 예측의 실현여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본 보고서를 분쟁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당 연구소의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